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총 인원 수 등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변경하여 평가 내실화 및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나.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안제31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31명 이상 33명 이하”를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2월 말”을 “3월 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u>31명 이상 33명 이하</u> 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u>33명 이상 35명 이하</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실적 등의 평가) ① (생략)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실적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u>2월 말일까지</u>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 ----- ----- ----- ----- <u>3월 말</u> ----- -----. -----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연 락 처	(044) 201 - 4908